

## 제도-16

## 국방벤처 지원사업 지원규모 확대 요청

### 【 건의요지 】

- 국방벤처 지원사업에 인건비 등을 반영토록 사업비 확대 요청

-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총개발비의 75% 범위내에서 최장 2년, 최대 3억원의 개발비를 정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업체의 인건비는 총 개발비 중 업체가 부담하는 25% 범위내에서 현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75% 지원금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부 고시)」 및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청 훈령)」에 따라 정부 지원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는 인력의 인건비의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 :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 (국방기술품질원 지침) 별지 1-2호 9. 총사업비

< 문의처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47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기부 고시)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 ③ 생략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3.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 규정」 (청 훈령)

제21조(사업비의 조성 등) ①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으로 조성한다.

②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 비율 및 기업부담금의 현금·현물 비율은 별표 3의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의 부담 기준"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